

아청법 가상물조항 개정 필요성

박경신 오픈넷 이사

kyungsinpark@korea.ac.kr

이 그림의 작가가 최소 징역5년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그림의 작가가 최소 징역5년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그림의 작가가 최소 징역5년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양형비교

실제 성범죄

- **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2조 (아동성매매)**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 제한
- **아청법 제7조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 를 하는 매체물의 제작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 제한

배포에 대한 양형

음란물 배포

- 형법 제243조-245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 [그런]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는 .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망법 제74조(벌칙)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매체물”의 배포

-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0년신상등록 및 10년취업제한

아동포르노란? -1

- 아동포르노규제의 원래 취지 -아동포르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성학대의 예방 - 유통과 소지 자체를 금지를 통해 아동포르노제작 동기의 발본색원

아동포르노란? -2

- 범위의 확대 1: “아동성행위의 기록은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연기만 했어도 피해발생.
(“simulated”, 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포르노란? -3

- 범위의 확대 2: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조작 (morphing -> Virtual Child Pornography, EU아동포르노2005년 기본결정)

아동포르노란? -4

- 범위의 확대 3: 실사물이 아닌 경우에도 “any representation, 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단, 실제 아동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
- 범위의 확대 속에서도 핵심은 피해를 당하는 아동의 존재

우리나라 -2011년 이전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02년 김인규교사 사건의 위헌판정)

우리나라-2011년 이후

- 2011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또는 사람이 등장하여 다음의 하나를 하는 경우” 포함
- 문제점: 실제 아동 보호를 위해 엄중히 적용되던 모든 규제가 모두 가상아동물에도 똑같이 적용됨.

우리나라 -2011년 이후

1. 소지죄 외에 모두 아동포르노 관련자에게 20년신상 등록 및 10년 취업제한
2. 음란성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당연함. 아동포르노규제는 제작시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낮은 수위라도 적용됨.)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

love is...



...when your lips meet his.

TM Reg. U.S. Pat. Off. — all rights reserved
© 2012 Tribune Media Services, Inc.

love is...



...some mouth-to-mouth.

© www.LoveIsComix.com

love is...



...turning the other cheek

TM Reg. U.S. Pat. Off. — all rights reserved
© 2009 Tribune Media Services, Inc.

아청법의 위헌성 I - 평등원칙

- 입법취지 : "모든 아동성애는 아동성학대. 아동성학대를 미화한 모든 매체물은 성학대 유발. 가상물이라도 처벌해서 아동성학대 막아야"
- 반론: 옳다. 하지만 죄목은? 마약을 미화한 영화 제작자를 마약사범으로 처벌하는가? 살인을 다룬 영화제작자를 살인자로 처벌하는가?

위헌성 II- 과잉금지

- 미국 Ashcroft판결: 가상물 →? 실제 아동학대
- 스위스: 2009년 실존아동포르노 소비와 아동성범죄 인과관계 조사 (261명 조사) :
"없음"
- 덴마크: 2011년 코펜하겐 대학병원 Sexologisk Klinik의 보고서 → 개정보류
- 스웨덴: 대법원 2012년 6월 만화에 대한 아동성범죄 적용에 대해 위헌결정

위헌성 II-과잉금지

- 유발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 Ashcroft판결: "CPPA는 심리학매뉴얼의 사진에도 적용되며 성학대의 극악함을 다룬 영화에도 적용된다... 10대성행위와 아동성학대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문학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로미오와 줄리엣(13세)] [Traffic], [American Beauty], 우리 [는]... 젊은이들의 삶과 운명에 공감하고자 하고 끊임없이 경외한다. 예술과 문학은, 상처는 항상 치명적이고 실망은 항상 심오하고 잘못된 선택은 항상 비극적이었지만 도덕적 실천과 자아실현은 항상 손안에 있다고 믿었던, 우리 스스로 한때 알고 있던 성장기의 생생한 관심사들을 표현한다.

위헌성III-명확성

- “가상물을 처벌하려 해도 너무 운용 자체 불가.”
 -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 여기서의 인식은 서사적 인식을 말하는가? 시각적 인식을 말하는가? - 예: 아동의 몸을 가진 400세 요괴(슬라이드#2), 성인의 몸을 가진 10세 여아.
- 18세11개월이냐 19세이냐를 가지고 무죄 vs. 징역5년+신상등록20년+취업제한10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

사법부의 대응

- 2013년 5월 성인배우교복물 위헌제청(의정부)
- 2013년 6월 성인배우교복물 위헌취지 무죄 (안산지법)
- 2013년 8월 일본작품 블랙바이블 위헌제청(수원지법)
- 2014년 9월 대법원 1,2,3부 성인교복물 무죄 (“여성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 2014년 9월 애니메이션 위헌취지 무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년 헌재합헌결정

-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에 명백하고 음란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해석하는 한 합헌!!
 - 명확성의 원칙: 형식인가? 내용인가?)
 - 과잉금지의 원칙
 - “아동성범죄자 6명 중의 1명은 아동포르노 소지”,
 - “X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에 대한 처벌이 있었나?
 - 평등원칙
 - “법관의 양식”
 - 최소형량이 정해진 경우?
- 반전: 헌재가 보기에는 어떤 작품들이 그러한가?
(2014년9월 대법원 판결 인용)

실제 아동에 대한 피해

- 2011년 연간 아동성범죄 100여건 → 2012년 2천224건. 22배증가!!! 도대체 무슨 일이...
- 경찰인사고과: 최근까지 음란물배포는 아예 특진점수 가산이 되지 않고 아청법은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점수가 가산됨.
- 현재: 가산점이 없어져도 아청법은 4대범죄에 포함됨
- “성범죄에 대한 단속”여론이 비등해지기만 하면 가상아동물 단속까지 같이 증가.

외국사례

- 전세계에서 가상물의 제작 및 배포를 '아동성범죄'로 명시한 법제는 없음. 국제문헌이나 법률이 가상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
- 단, 가상물도 포함하는 <<음란물규제>>는 있음.
- 영국 - Images of Children Act - 아동성애물, 가상이라고 할지라도 성기, 성교 노출시 최고 3년까지 징역 - 음란물규제의 처벌수위
- 성범죄자로서 다루어지지 않음. 신상등록없음